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8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박홍근

진선미 • 김교흥 • 박정현

이수진 • 한정애 • 김영배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 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 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 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있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	
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	
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1.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점사
<u>1.</u> ~ <u>4.</u> (생 략)	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2.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